

서울특별시의회  
제323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4. 4.

서울특별시의회  
우형찬 의원 (더불어민주당, 양천3)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교육위원회 우형찬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 
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,

현재 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경우,

실명제 조항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,

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 결과 등에 있어,

원문 형태가 아닌 요약본 혹은 비공개 형태로

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해

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

□ 이에 정책연구용역 공개 시

전부를 공개하지 않는 명확한

비공개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해

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- 또한,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성과점검 결과 보고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, 매년 추진되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 및 합리적 용역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  
- 이에 안 제15조의 경우,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실명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
  
- 안 제17조제2항의 경우, 정책연구용역 결과 시,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, 비공개 사유 및 시점 적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,
  
- 안 제19조의 경우,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사후관리 조항 신설을 통해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 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 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 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